

1. 개정이유

119항공정비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기준에 대하여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119항공정비실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정함 (안 제9조의2제1항 및 2항)
나. 그 밖에 정비절차, 부품관리 등 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
이 정하도록 함(안 제9조의2제3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다. 합 의 : 해당없음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
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119항공정비실 시설 및 장비 기준) ①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119항공정비실에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는 격납시설
2. 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계류장 및 이착륙 시설
3. 항공기 정비용 장비·공구·자재의 보관 시설
4.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수행을 위한 사무실 및 교육시설
5. 그 밖에 정비 등을 수행하기 위한 환기, 조명, 온도 및 습도조절 설비

②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119항공정비실에 갖추어야 할 장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를 위한 정비작업에 필요한 장비, 공구 및 자재
2. 장비, 공구, 자재들은 제작사에서 권고된 것 또는 제작사에 의해 권고된 것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것

③ 그 밖에 정비절차, 부품관리 등 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9조의2(119항공정비실 시설 및 장비 기준) ①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119항공정비실에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<u>1. 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는 격납시설</u> <u>2. 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계류장 및 이착륙 시설</u> <u>3. 항공기 정비용 장비 · 공구 · 자재의 보관 시설</u> <u>4.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수행을 위한 사무실 및 교육시설</u> <u>5. 그 밖에 정비 등을 수행하기 위한 환기, 조명, 온도 및 습도 조절 설비</u> <u>②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119항공정비실에 갖추어야 할 장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<u>1.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를 위한 정비작업에 필요한 장비, 공구 및 자재</u> <u>2. 장비, 공구, 자재들은 제작사에서 권고된 것 또는 제작사</u>

에 의해 권고된 것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것

③ 그 밖에 정비절차, 부품관리 등 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소방청 항공통신과	
연 락 처	(04) 205 - 7701